

의안번호	2218489
의 퇴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6. 6. 2.
추 계 번호	26A2304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3억 7,100만원, 2031년 24억 5,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20억 6,800만원(연평균 24억 1,4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용기등의 검사 (안 제17조)	2,371	2,392	2,413	2,435	2,457	12,068	2,414

주: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(용기등의 검사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·재검사를 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·재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. 이 경우 검사·재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(제8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7조(용기등의 검사)	○ (일부 추계)	- 법 제17조제1항의 검사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- 법 제17조제2항의 재검사의 경우 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법 제17조제1항¹⁾의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검사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- 법 제17조제2항²⁾의 재검사의 경우 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 비용 지원 정도에 대해 개정안은 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검사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³⁾

1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7조(용기등의 검사) ① 용기등을 제조·수리 또는 수입한 자(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)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2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7조(용기등의 검사)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
2. 손상의 발생
3. 합격표시의 훼손
4.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

3) 법 제17조의 검사 및 재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,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관련 수수료 또한 이에 맞게 조정되는 것으로 가정함
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17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검사 및 재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 - 본 추계에서는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검사에 한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검사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 - 최근 5년 동안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용기 검사 관련 비용 추이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검사 비용 추이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법 제17조제1항(검사)	4,494	4,170	4,215	4,748	4,657

자료: 산업통상부

- 최근 5년 동안의 검사 비용 증가 추이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검사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23억 7,1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20억 6,800만원으로 추계됨
 - 앞의 [표 2]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검사 비용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0.9% 증가함

[표 3]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검사 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비용 추정(A)	4,741	4,784	4,827	4,870	4,914	—
추가재정소요(A×50%)	2,371	2,392	2,413	2,435	2,457	12,06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최근 5년 동안의 검사 비용 증가 추이가 유지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검사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